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346
----------	------

2016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6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3. 상정일자 : 제270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6년 9월 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임.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매 4회차 재위탁(12차)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Ⅲ. 검토보고의 요지

#### 1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의회 심의의 필요성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으로 현 수탁기관인 서울의료원의 계약이 2016년 9월16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통해 추후 2년간(2016. 9.16. ~ 2018. 9.15.) 서울의료원이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임.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바, 용인정신병원은 1987년 이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음.
-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용인정신병원은 1987년 개소하여 2015년까지 (의)용인병원유지재단을 통해 운용되어 왔는 바, 2015년부터 서울의료원이 단년(1년)계약으로 수탁받아 운영함에 따라 집행부는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의료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2 민간위탁사무의 내용과 법적 검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으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시장이 용인정신병원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용인정신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정신질환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의 의료인만이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사무는 의료인(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하겠음.
- 또한 위탁과 관련하여서 「서울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1)에 따라 서울의료원은 설립된 의료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이 용인정신병원을 위탁운영하는 방식에는 법적인 문제점이 없다고 보임.

### 3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서울특별시립 용인정신병원의 경우 용인지역에서 1987년부터 운영되어 온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정신의료기관으로 「정신보건법」 제8조2)에 따라 설치되었음.
- 시장에게 정신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의 의무가 있으나, 의료서비스가 가지는 고도의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의 자체적인 행정역량으로는 적절하게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1)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3.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 6.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생략>

2) 제8조(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병원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한다.

-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성과는 정량적으로 측정가능한 바,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병원 운영상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집행부의 역량으로 수행가능하다고 하겠음.
- 정신의료기관의 운영에는 인권과 같은 민감한 측면이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한 지도·감독을 통해 시립병원에 대한 걱정된 운영을 집행부가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4 재계약 대상자의 주요성과

- 재계약 대상자인 서울의료원의 경우 외부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분야 공공사업의 자격요건상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표> 서울의료원의 3년간 주요평가 현황

평가명	주관	평가주기	평가결과		
			2013	2014	2015
서울시출연기관경영평가	서울시	1년	83.70	85.14	91.34
서울특별시립병원평가	서울시	1년	837.1	802.0	858.0
지역거점공공병원운영평가	보건복지부	1년	79.1	82.3	83.6
공공보건의료계획평가	보건복지부	1년	우수	최우수	미통보
의료기관인증평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년	인증	-	-

- 서울의료원은 용인정신병원 위탁기간 동안 서울시로부터 약 17억원의 예비비를 지원받아 용인정신병원의 법정 의무시설을 확충하고, 병상수를 416병상에서 178병상으로 줄임으로써 환자수 대비 적정한 의료인력을 확보하였음.(참고자료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수탁자의 비협조로 인하여 현재 외래진료가 어려운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서울의료원의 MRI 등 고가의료장비 공동 활용 및 수탁검사 지원으로 자본, 인력 등 투자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필요시 서울의료원의 인력을 겸직 또는 파견형태로 운영하여 갑작스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음.

※ 현재 용인정신병원의 인적구성은 의료직 5명, 간호직 23명, 보건직 5명, 관리직 8명, 기능직 1명으로 총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울의료원에서 파견하거나 또는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sup>3)</sup>

<표> 용인정신병원의 인력구성

의료직	간호직	보건직	관리직	기능직	합계
5(2)	23(0)	5(4)	8(2)	1(0)	42(8)

주: ( ) 겸직자수, 2016년 8월1일 현재.

- 용인정신병원의 인력구성은 법정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정신과 간호사들의 경우 법정기준보다 높은 인력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임.

#### 4 종합의견 및 향후과제

-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이 단순 행정행위가 아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본 서비스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하겠음.
  - 또한 의료기관인 용인정신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울의료원의 전문성과 재정의 건전성, 서비스의 지속성 등의 같은 측면과 서울의료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료장비 공동 활용 등으로 자본과 인력 등 투자비용의 절감이 가능하고, 지난 1년간의 운영 실적을 감안할 때 재계약 대상으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서 용인정신병원외에도 북부병원, 동부병원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3) 178병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신과 전문의 3인, 간호사 13인 이상이면 법적 요건에 따라 적절한 인력구성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참고자료

<표>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원 등 종사자의 수

종사자의 수	종사자의 수
종사자의 자격	정신병원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
정신과전문의	입원환자 6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과 전공의는 이를 정신과전문의 0.5인으로 본다.
간호사	입원환자 13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요원	입원환자 100인당 1인을 두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이를 전문요원 0.5인으로 본다

비고: 외래환자 3명, 낮병동 환자 2명은 이를 각각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346
----------	------

제출년월일 : 2016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임
- 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매 4회차 재위탁(12차)에 해당되어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상하동)
- 시설규모 : 대지 33,06㎡, 건물 5,765.38㎡(지상5층, 지하1층)
- 개원일자 : 1987. 6.18.



나.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2016. 9.16. ~ 2018. 9.15.)
- 위탁업무
  -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용인정신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소요예산 : 350백만원(2016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다. 민간위탁 추진현황

계약 차수	계약기간	수탁기관	비고
1차	1987.06.18 ~ 1990.06.17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최초
2차	1990.06.18 ~ 1993.06.17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재계약
3차	1993.06.18 ~ 1996.06.17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재계약
4차	1996.06.18 ~ 1999.06.17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재계약
5차	1999.06.18 ~ 2002.06.17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재계약
6차	2002.06.18 ~ 2005.06.17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재계약
7차	2005.06.18 ~ 2008.06.17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재계약
8차	2008.06.18 ~ 2009.06.17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재계약
9차	2009.06.18 ~ 2012.06.17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재위탁
10차	2012.06.18 ~ 2015.06.17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재위탁
-	2015.06.18 ~ 2015.09.15	(의)용인병원유지재단	연장협약
11차	2015.09.16 ~ 2016.09.15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재위탁



## 라. 민간위탁 및 재계약 필요성

-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은 '8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온 정신 질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서울의료원은 첨단의료시설과 최상의 의료시스템을 갖춘 623병상 규모의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공병원으로 다년간의 시립병원 위수탁 경험과 그동안의 공공의료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용인정신병원과 연계하여 공공의료서비스 통합 제공 가능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 제8조

제8조(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는 병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조직담당관)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박인숙 (☎2133 - 7517)